

안동대학교 LINC사업단 가족회사 협약서

경북 미래문화재단과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「안동대학교 가족회사」의 발전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서는 「안동대학교 가족회사」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상호협력)

1. 양 기관의 정보교류 (교육, 연구, 산학협력 분야의 신기술 및 현장 정보 교환 등).
 2. 양 기관의 인적교류 (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, 위탁교육 및 협동강의 등).
 3. 양 기관의 물적 교류 (양 기관의 시설 및 장비,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).
 4.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(이하 'LINC사업'이라 한다)의 적극 참여를 통한 양 기관의 상호 발전 도모
 5. 학생의 장학지원, 현장실습,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.

제3조 (비용분담) 상기 합의사항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출연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) 본 협약에 의해 취득된 양 기관의 업무상, 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업무주관) 본 협약서에 규정한 업무협력의 운영과 추진은 안동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주관하며, LINC사업 관련은 LINC사업단에서 이를 주관한다. 또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산학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협의토록 한다.

제6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1.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 2. 양 기관은 본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극 협조한다.
 3. 협약의 변경 혹은 해지할 경우,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혹은 해지한다.

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자동적으로 지속된다.

20 년 월 일

경북 미래문화재단

(대 표) 권 영 한



안동대학교LINC사업단

(단 장) 김 혁 (기)(9)

기(기) 7